

◆ The Problems of the Library Law in the field of public Library (Korea)

特輯

圖書館法의 問題點

—公共圖書館 分野—

李 喆 珪
(國會圖書館 閱覽課長)

<目次>

- 머 리 말
- I. 公共圖書館關係法規
- II. 問題點
 - 1.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
 - 2. 公共圖書館의 施設問題
 - 3. 豫算問題
 - 4. 司書職員問題
 - 5. 圖書館의 使用料問題
 - 6. 所屬廳의 一元化問題
- 맺 는 말

머 리 말

오늘날 우리나라는 온국민이 잘 살기 위한 國家發展과 福祉社會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榮光스러운 祖國을 後孫에게 물려주기 위한 維新課業이 始作되었다. 이 維新課業을 遂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를 莫論하고 새마음 새精神으로 家庭에서 職場에서 또한 社會生活에 있어서 勤勉하고 誠實하며 自主와 協力하는 精神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아가야 할 것이며 國家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各分野에 걸쳐 制度를 再整備 確立하고 健全한 政策을 세워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이러한 福祉建設을 위하여 새마을 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거니와 이 運動에는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社會教育施設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社會教育施設中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住民의 教育機關으로서 또한 文化機關으로서 個個人의 生活向上에 直結되는 機關이기 때문에 그 地域社會에서 차지하는 地位는 大端히 重要하다 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이와 같이 重要한 施設인 公共圖書館에 대한 國家의 文化政策은 어

떠한가? 여기에 1963年 10月 28日字로 制定公布된 現行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에 관한 問題點을 드러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 問題點에 대하여서는 10年에 이르는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數次에 걸쳐 그 問題點을 提起하였고 또한 그 是正方向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껏 아무런 改善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이미 提起되고 發表된 問題點에 대하여 維新課業遂行과 더불어 積極的인 公共圖書館政策을 樹立하여 福祉社會를 이룩하도록 促求하는 뜻에서 몇가지 事項을 간추려 列擧하고자 한다.

I. 公共圖書館關係法規

그러면 여기에 圖書館法의 問題點을 들기 前에 參考로 公共圖書館에 關係되는 法規를 圖書館法 및 同施行令에서 法條文順序에 따라 그 趣旨를 要約하여 列擧하고자 한다.

現行 우리나라 圖書館法의 構成은 第1章 總則 第2章 公共圖書館(第1節 總則, 第2節 國立中央圖書館, 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第3章 學校圖書館, 第4章 罪則을 包含하고 있다. 그러므로 各種 圖書館을 包含한 綜合的인 圖書館法이라 할 수 있다.

1. 圖書館法

- 第3條 1項에서는 圖書館은 設立者에 따라 國, 公,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한다는 것과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 學校,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는 것을 規定하였고 同條 2項에서는 公共圖書館의 定義를 規定하였음
- 第5條 2項에서는 公共圖書館은 環境과 施設이 利用者에게 便利하고 保健이나 衛生등에 適合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同條 3項에서는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閣令으로 定하도록 規定하였음
- 第6條 1項에서는 公共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을 두도록 義務的으로 規定하였

고 同條 2項에서는 司書職員의 資格과 養成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하도록 하였음.

第7條에서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고 勸獎하는 規定을 두었음.

第8條에서는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9條 1項에서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第1次로 市郡教育長,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教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도록 그 監督廳을 規定하였음.

第10條에서는 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美風良俗이나 施設基準을 維持 못한 경우에 停館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11條에서는 公共圖書館의 設立者는 當該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監督官廳에 申告하도록 規定하였음.

第12條 1項에서는 地方自治團體가 發刊하는 刑物은 그가 設置한 公共圖書館에 義務의으로 納本하도록 規定하였음.

第15條에서는 公共圖書館의 活動과 機能에 대하여 規定하였음.

第18條 1項에서는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이法和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하였고 同條 2項에서는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 部를 두도록 하였고 또 公館이나 移動文庫를 둘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19條에서는 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20條에서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規畫하고자 하는者는 公共圖書館 施設基準에 맞는 施設을 갖추고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도록 規定하였음.

第21條 1項에서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이 定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고 同條 2項에서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補助를 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대하여 特別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22條 1項에서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그 運營에 관한 專門의인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고 同條 2項에서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과 運營을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第23條에서는 監督廳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必要한 報告를 받을 수 있도록 規定하였음.

2. 圖書館法 施行令

第2條 1項에서는 法 第5條 第3項의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을 規定하였음.

第3條에서는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에 關한 登錄 節次와 그 手續에 대하여 規定하였음.

第4條에서는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의 資格區分을 規定하였음.

第6條 2項에서는 法 第6條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配置를 建物面積에 基準해서 配置하도록 規定하였음.

II. 問題 點

1.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

各國의 圖書館憲章에서 보면 公共圖書館은 教育機關이요, 文化機關이요, 調查研究機關으로서 地域社會에 대하여 重要한 奉仕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에 있어서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圖書館法 第1條(目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法을 制定하는 目的은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國民의 教育和 文化發展에 寄與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에 있어서 더구나 福祉社會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社會教育機關인 것이다.

그러한 點에서 英國이나 美國, 自由中國 등 여러 나라에서는 公共圖書館에 관한 法을 制定하여 그 設置를 義務化하고 財政의 補助를 하여 모든 國民은 公共圖書館의 奉仕를 받을 수 있고 自由로 이 利用할 수 있도록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運營에 대하여 積極의인 政策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데 比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現在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은 不過 63館으로서 人口 約 50萬人에 1館이 該當되는 셈이니 모든 國民이 公共圖書館의 惠澤을 받기는 어려운 現實임을 알 수 있다. 福祉社會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約 2,000餘名에 1館의 公共圖書館을 가지고 있는데 比하면 너무나도 큰 差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實情에서 圖書館法의 制定을 切實히 느끼게 되어 1963年 10月 28日 字로 圖書館法의 制定公布는 보았으나 그 設置育成에 對하여 너무나 微溫의이어서 事實上 圖書館法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指摘과 非難이 많았던 것이다.

즉 圖書館法 第7條(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 設置의 勸獎)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

教育 및 文化의 向上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였고 또한 同18條(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①에서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라고 規定한데 不過하다. 그러니 이 條項은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積極的인 政策으로서 義務的으로 設置 育成하도록 하지 않으면 公共圖書館의 設置는 勿論 地域社會 住民에게 奉仕를 할 수 없는 것이다.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이 問題에 대하여 財政上의 困難을 들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 狀態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니 政府는 責任을 지고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대하여 義務的인 制度確立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公共圖書館의 施設問題

公共圖書館의 奉仕를 위하여서는 圖書館資料라든가 書庫, 事務室 各種閱覽室 등 여러가지 施設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圖書館施設에 대하여 어떠한 基準을 갖추어야 奉仕活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施設基準 問題도 先進各國에서는 具體的으로 藏書의 基本量 一般圖書, 新聞, 雜誌 등 年間 增加되어야 할 數量, 그리고 建物面積의 경우도 人口를 基準으로 하여 具體的으로 基準을 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必要한 備品등에 이르기까지 細細하게 基準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準은 地域의 公共圖書館 뿐만 아니라 分館에 대하여서도 施設, 藏書, 職員 등 바람직한 基準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點에 대하여 우리나라 圖書館法 第5條 3項에서는 公共圖書館 施設基準을 閣令으로 定하도록하여 1965年 3月 26日 圖書館法施行令을 制定公布하였는데 同施行令 地2條 1項에서 「公共圖書館 施設基準은 別表와 같다」라고 하며 人口基準에 따라 建物坪數, 閱覽室, 兒童閱覽室, 定期刊物室, 書庫, 事務室 등의 坪數 配定 比率를 規定하였으며 또한 基本 藏書冊數와 年間增加 冊數를 規定하였으나 그 基準 設定의 根據로서 人口에 따르는 1日平均 登館者數의 算定, 閱覽室, 所要面積의 算定, 또한 人口 1人當 最少限 必要로 하는 冊數, 이에 따르는 書庫의 所要面積등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은 合理性과 客觀性을 缺如하고 있다. 따라서 外國의 基準에 比할 수가 없는 程度이다.

그러니 形式的으로 適當히 施設基準을 設定할 것이 아니라 例를 들면 1人的 閱覽席이 最少限 必要로 하는 面積을 어느 程度로 할 것이며 全體 人口의 1日 平均 登館者數를 몇 名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것을 客觀性

있게 設定하면 自然 閱覽席의 所要坪數가 算出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모든 施設에 대하여 基本的인 基礎算出을 하여 最低限의 施設基準을 定하고 한번 定한 基準에 對하여서는 그대로 履行하도록 拘束力과 監督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形式上으로 施設基準만 마련하여 놓고 그 基準에 未達하에도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은 그러한 施策은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다.

3. 豫算問題

아무리 좋은 國家事業이나 地域開發事業의 計劃도 豫算의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事業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國民文化發展과 地域開發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認定하고 없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實際로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運營에 必要한 豫算 補助에 대한 法的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矛盾이다.

즉 法 第7條 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 設置의 勸獎에서 「……豫算의 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였고 同法 第19條(補助)에서 「……豫算의 範圍안에서 當該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라고 義務規定이 아닌 任意規定으로 되어 있으니 「……補助할 수 있다」는 條項을 가지고 現實的으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補助가 可能하겠는가? 이것은 結局 補助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 없는 것이다. 이러한 微溫的인 消極的인 圖書館政策은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의 發展이나 福祉社會의 建設은 바라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健全한 運營을 위한 財政的 補助를 하기 위해서는 英國·美國 등 各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圖書館稅나 圖書館補助金法의 例를 볼 수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教育稅, 地方稅 또는 圖書館稅나 社會教育稅등을 新設하여 그 育成, 發展策을 早速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 要請된다.

4. 司書職員問題

가. 地方公務員法中 司書職種 問題

圖書館의 業務內容과 奉仕活動은 國, 公, 私立의 圖書館을 莫論하고 다 같으며 司書의 資質과 資格도 다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法이 制定되면 그 施行은 國家機關이고 地方機關이고 다 같이 따라야 할 것이다

즉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서 規定한 司書職員의 資格制度는 國, 公, 私立의 모든 圖書館에서 從事하는 司書職員에 대한 資格을 말한 것이지 決코 司書職國家公務員에만 該當되는 것은 아니며 公務員職種 또한 國

家公務員이고 地方公務員이고 그 職務의 性格에 따라 國家고 地方이고 同一 職種으로 마련하여 같은 法이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2項에서 公共圖書館에 대한 司書職員 配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地方公務員 任用令에는 司書職種이 없는 까닭에 그 任用, 採用, 轉補등에 많은 問題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專門職 司書職員의 確保나 地方 公共圖書館 活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地方公共圖書館을 發展시키고 地域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서는 하루 速히 司書職種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司書職採用 試驗科目

모든 職種도 그 職務의 性格, 重要性, 複雜性, 責任 등을 分析하여 專門化된 職列로 區分하는 것이 오늘날의 人事管理上의 職位分類制度이다.

이러한 點에서 司書職도 한 分野의 專門職으로서 資格證을 所持하여야만이 그 業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公務員任用試驗令에 司書職公務員 試驗科目에 圖書館學, 專門科目이 插入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司書職 5級公開採用試驗에 있어서는 圖書館學 專門科目이 하나도 없고 같은 5級的 特別採用試驗이나 轉職試驗에는 다같이 圖書館學 專門科目이 있다. 그러나 試驗應試資格으로서의 準司書의 資格證 所持者라야만 應試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크다란 矛盾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5級司書職公務員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다같이 圖書館業務에 従事할 司書職에 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業務의 專門性和 技術性を 認定하여 司書職員의 資格을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서 規定하였으면서도 5級이라 하며 圖書館學 專門科目이 없음은 理論上 맞지 아니하니 公務員任用試驗令을 改正하여 司書職 5級公開採用試驗에 圖書館學科目을 넣어야 할 것이다.

다. 司書資格制度問題

司書職의 專門性和 技術性を 認定하고 專門職으로서의 確立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司書資格에 關한 法規가 마련되었다. 즉 圖書館法 第6條 2項에 根據하여 同法施行令 第4條(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에서 正司書와 準司書에 대한 資格 區分을 規定하였다.

이와 같이 圖書館 業務는 專門性和 技術성이 要求되기 때문에 國家는 圖書館業務에 従事하는 職員은 司書資格證을 所持하여야만 한다고 規定하여 오늘날 司書에 任用되는 사람은 司書資格證을 가져야만 應試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問題로 삼는것은 이 資格證 制度와 職場의 上下職位와는 아무런 體係性和 關連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準司書資格 所持者라도 係

長, 課長 등으로 昇進할 수 있고 正司書資格을 가진 사람이라도 下位職에 있어도 何等問題가 되지 않기 때문에 資格制度의 意義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職場에서 上位職에 昇進하려면 먼저 所定의 教育과 技術을 習得하여 上位職 資格을 얻도록 制度의 確立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資格制度를 둔 意義와 價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法施行令 附則 經過措置에서 「이 令 施行當時 國, 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 公立의 學校 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職公務員(司書業務에 従事하는 地方公務員을 包含한다)은 이 令 施行日로부터 1年以內에 文教部長官이 定하는 銓衡을 거쳐 正司書 또는 準司書의 資格證을 받을 수 있다」라고 規定한 것을 「……資格證을 받아야 한다」라고 義務規定化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5. 圖書館의 使用料問題

유네스코圖書館憲章(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49) 第2項에서 보면 公共圖書館은 無料公開의 原則으로 「公衆을 위하여 公衆에 의하여 運營되는 民主的 機關으로서 存續되기 위하여서는 ① 法律에 의하여 創設維持 되어야 하고 ② 經費는 大部分 國庫金에 의하여 支拂되어야 하고 ③ 職業, 信仰, 階級, 人種의 差別 없이 地域社會 全員에게 平等하게 奉仕하여야 한다」이렇듯 公共圖書館은 法에 의하여 設置되어야 하고 國民의 稅金에 의하여 運營되는 機關이어야 하기 때문에 公衆은 兒童에서 老人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無料로서 自由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圖書館法 第8條(圖書館의 使用料)에는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運營이 國家나 自方自治團體의 財政에 의하여 維持되는 하나의 教育機關으로 볼 때 使用料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므로 이 圖書館의 使用料 徵收問題는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財政補助를 義務化함과 同時에 圖書館 使用料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所屬廳의 一元化問題

圖書館法 第14條에는 公共圖書館은 國家, 地方自治 團體 또는 民法에 의한 法人만이 設置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現在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은 70個館(國立中央圖書館 除外)으로서 그 所要廳別로 보면 文教部에 17個館, 內務部에 35個館, 私立圖書館이 14個館, 文化院所屬이 4個館으로 되어 있다.

圖書館法 第9條(監督廳) 1項을 보면 「私立的 公共圖

書館은 第1次로 市, 郡教育長(서울特別市, 釜山直割市 教育委員會를 包含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教部長官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라고 規定하였으나 公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서는 指揮 監督에 관한 明確한 規定이 없다. 이렇게 볼 때 前記한 所屬廳別로 본 圖書館中 私立의 公共圖書館 14個館과 文教部에 所屬된 17個館은 實質的으로 文教部의 指揮 監督을 받고 있는 셈이고, 內部部에 所屬된 圖書館은 文教部의 指揮 監督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公共圖書館의 使命과 機能이 社會教育에 屬해 있으므로 모든 公共圖書館은 形式的인 面에서 文教部의 指揮 監督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公共圖書館의 所屬廳이 文教부와 內務部로 二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指揮 監督의 問題, 財政問題 등 公共圖書館의 政策과 그 遂行上 여러가지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所屬廳을 一元化하여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맺 는 말

以上 現行圖書館法中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 施設問題, 豫算問題, 司書職員問題, 圖書館의 使用料問題, 所屬廳의 一元化問題 등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나 이밖에도 소소한 問題點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問題의 解決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과 直接關聯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

(16面에서 계속)

要求의 妥當性 如否에 따라 그 時代에 알맞게 改正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制定 當時의 法의 內容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맞지 않는 條項도 發見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圖書館 關係의 諸法도 그 當時로는 適法이 였으며 現在에도 適法이 긴하나 極少部分이 本人이 本見地에서 改正 또는 補強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상기와 같이 問題點을 提起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맺는 바입니다. 다만 本人이 法學徒가 아니므로 法條文 引用 및 說明에 不實함이 많을 것을 사과 합니다.

結論을 말하면,

1. 施設問題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 「圖書館의 設備은 따로 法으로 定한다」라고 이를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 2項에 圖書館에 必要한 各室의 名稱을 補完했으면 합니다.

2. 資料問題

b. 圖書館의 資料를 圖書라는 語彙에만 局限시키지 말고(定刊物이란 語彙도 있지만) 特殊資料도 包含시켜

그러나 再三 말할거니와 公共圖書館은 教育機關이요 文化機關으로서 地域社會發展과 福祉社會 建設에 없어서는 아니될 機關이므로 健全한 發展을 위한 法的 뒷받침과 制度的인 確立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重要한 責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 維新課業이 始作되고 있으므로 우리 圖書館人은 專門職으로서의 倫理와 精神을 가지고 圖書館奉仕에 臨하여야 하며 政府는 過去의 모든 制度的 未備點을 改善하고 健全한 政策을 세워 國家發展과 福祉社會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① 張一世 「圖書館法の 問題點」 出版文化, 1970年 5月 pp. 15~18
- ② 鄭駢謨 「圖書館法은 改正되어야 한다」 出版文化, 1972年 5月
- ③ 李喆珪 「圖書館法에 對한 考察」 도서관, 1971年 7月(v. 26. No. 7) pp. 19-23
- ④ 윤학구 「현행 圖書館法の 問題點」 도서관, 1971年 7월(v. 26. No. 7) p. 35-38
- ⑤ 金基泰 「公共圖書館 育成法(奉仕法)을 提言한다」 국회도서관보, 1971年 11월(v. 8. No. 7)
- ⑥ 金鍾鼓 「우리나라 圖書館의 發展策」 국회도서관보, v.7 No. 2(1969년 3월호)

圖書館資料로 文句 修正을 했으면 합니다.

b.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된 學生 1人當의 冊數 代身 該 大學의 經常豫算의 몇%를 資料 贈入費에 充當토록 하고 文教當局이 이의 執行 監督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大學圖書館이 바라는 質의 藏書構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3. 司書職問題

a. 任用과 人員數

司書職의 任用試驗에 5級에는 圖書館學에 關한 課目이 없는 것으로 보아 正司書 및 準司書의 初任은 4級부터 任用하되 各級 大學圖書館의 특주되는 奉仕 業務를 감안하여 4級 以上의 圖書館職員數를 增員하여야 합니다.

b. 待遇 問題

司書職手當을 모든 大學圖書館 職員에 支給하게 하며 專任教授와 同一한 學位와 研究業績이 있는 專門職 司書의 地位를 教授職과 同一하게 規定되기를 바랍니다.